

제201회 영등포구의회
2017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
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6. 20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31호로 2017년 6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,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정 및 현재 상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 제8조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추가 신설

○ 서울지방보훈청장 (안 제3조제3항제17호)

나. 현행 기관(장) 명칭으로 조문 정비

(안 제3조제3항제2호·제3호·제15호)

다.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순화 등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통합방위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『통합방위법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관련 규정중 지방보훈청장을 조례에 반영하고, 본문의 기관장 명칭과 용어 등을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3조제3항 제17호에는 모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당연직위원에 지방보훈청장 추가하는 것이며,
 - 안 제3호제3항 제2호·3·15호의 기관(장) 명칭을 현행화로 조문 정비하는 것이며,
 - 그 밖에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한 것으로서,
- 검토결과,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참 고 자 료

1 통합방위법 시행령

제8조(지역협의회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) ① 시·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·군·구 통합방위협의회(이하 "지역협의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8.20., 2014.11.19., 2015.1.6.>

1.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
2. 해당 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
3. 국가정보원의 관계자
4. 지방검찰청의 검사장·지청장 또는 검사
5.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
6.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해양경비안전서장
7.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
8.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
9. 지방병무관서의 장
10. 교육감 또는 교육장
11. 지방의회 의장
12. 지방소방관서의 장
13. 지역 재향군인회장
14.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